

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제·개정 사전에고

1. 규정 명칭

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 처리기준

2. 제·개정 이유

- 가. 규제해제 사유 추가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규제등록 시기 명확화
- 나. 관계법령 및 타 부서 내규 개정사항 반영

3. 주요 제·개정 내용

- 가. (규정) 담보주택 경매 취하 사유 추가
- 나. (규정) 채무조정 잠정조치 시행 근거 마련
- 다. (규정) 기타 주신보 관리규정 준용 등 규정 재정비 등
- 라. (기준) 채무관계자에 대한 규제등록 사유 및 시기 명확화
- 마. (기준)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사유 추가(법적 변제 의무 종결 등)
- 바. (기준) 당해세 우선변제권 관련 업무처리방법 명확화
- 사. (기준) 부동산 유형별 예상구상실익 금액 산정방법 정비
- 아. (기준) 기타 관계법령 및 타부서 내규 개정사항 반영, 표현정비 등

4. 의견제출

이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 까지(도착기준)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)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
- 담당자(이메일) : 이수현 차장(leesu@hf.go.kr)
- 전화번호 : 051-663-8186
- 팩스번호 : 0505-036-0185

붙임 1.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개정안 전·후대비표

2.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·후대비표